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70
------	------

2018. 3. 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2월 12일, 신선택의원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8.3.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신선택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조례상에 전태일 열사 기념 및 시민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되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전태일 노동복합 시설”을 추가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전태일 열사의 추모공간 조성과 서울시민의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현황

-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2018년 11월 청계천변에 전태일 열사의 기념관을 조성하고 동시에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시민을 위한 노동시설들을 집약하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하 “노동복합시설”)을 개관할 계획임.

- 시는 지난해 5월 민간건물 매각을 시작으로 8월말 시장, 전태일재단, 노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설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노력해왔음.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요〉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관수동 152-1)
- 규모 : 지상6층, 대지면적 553.1㎡ / 연면적 1,940.73㎡
- 층별용도

구 분	면 적	용 도
1층	402.38㎡	전태일 기념 공간(수장고), 주차장, 기계실 등
2층	371.43㎡	전태일 기념 공간(공연장, 사무공간)
3층	412.35㎡	전태일 기념 공간(전시실, 체험장, 교육장)
4층	411.92㎡	노동 허브,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5층	270.94㎡	서울노동권익센터
6층	71.71㎡	회의실 및 휴게실

※ 당초 계획상 노동복합시설 내 입주예정이던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노동복합시설 내 공간 부족 등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 입주·이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노동복합시설의 총 사업비는 237억 6,800만원으로, 시는 2017년 180억 6,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시설비 178억 4,100만원에는 건물매입비용 165억원, 정밀안전진단 3천만원, 실시설계 1억원, 리모델링비용 1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무관리	공공운영	민간위탁	시 설	감 리	시설부대
계	23,768	227	72	1,008	22,371	40	50
2017년	18,063	177	45	-	17,841	-	-
2018년 (요구)	5,705	50	27	1,008	4,530	40	50

- 2018년 시설의 예산은 총 57억 500만원으로, 이 중 민간위탁금 10억 895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금 예산(안)〉

현 예산편성 내역 : 1,008,195천원(민간위탁금)
<p>① 인건비 : 188,191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 107,47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장1명(3,437천원×1명×6개월) 20,622천원 ▶ 국장1명(2,816천원×1명×6개월) 16,896천원 ▶ 팀원3명(2,120천원×3명×6개월) 38,160천원 ▶ 팀원5명(2,120천원×5명×3개월) 31,800천원 - 기타 제수당 : 46,27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수당 500천원×1명(관장)×6개월+200천원×1명(국장)×6개월=4,200천원 ▶ 명절휴가비 107,478천원÷6개월×60%=10,747천원 ▶ 자격수당 200천원×3명×6개월=3,600천원 ▶ 기말수당 107,478천원÷6개월×50%=8,957천원 ▶ 가족수당 60천원×(5명×6개월+5명×3개월)=2,700천원 ▶ 정액급식비 100천원×(5명×6개월+5명×3개월)=4,500천원 ▶ 초과근무수당 107,478천원÷6개월÷209×1.5×15시간×6개월=11,570천원 - 기타 : 34,439천원 ※ 실제 인력 운용시 경력호봉 책정 등 대비금액

② 운영비 : 189,400천원

- 업무추진비, 4대 보험료,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사무공간 임대료 등

③ 자산취득비 : 38,000천원

- 컴퓨터, 복합기 등

④ 보상비 : 176,000천원

- 기획전시 운영전시품 대여, 감정평가 등

⑤ 시설관리비 : 300,000천원

- 시설용역비, 수장고 관리, 시설비품 관리 등

⑥ 위탁대행수수료 : 36,604천원

- 분기별 지급,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⑦ 사업비 : 80,000천원

- 현재 공고 중인 노동복합시설의 수탁기관은 4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선정된 수탁기관은 입주기관 관리 및 시설의 총괄 관리와 전태일 기념관의 전시와 운영,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이다.
- 시는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예정된 시기에 노동복합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향후 전태일 기념관과 노동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바임.

다. 서울시의 근로자복지시설 현황

- 동 조례에 따라 시는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

근로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세 곳의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으로, 2018년 근로자복지시설에 편성된 예산은 총 31억 6,373만원임.

- 이 중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로 2억 4천만원을, '강북 근로자복지관'에는 혁신파크 내 위치한 현 건물에 대한 관리비 1억2천만원을 지원중이며,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 약 28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 개요〉

(단위 : 천원)

시설명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내용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교육사업(조합원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보장 기반구축 민관협력 거버넌스구축	
수탁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위치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은평구 통일로 684	종로구 율곡로 56	
예산	2016	62,420	3,630,000	1,418,380
	2017	1,924,675	1,120,000	2,863,324
	2018	240,090	120,000	2,803,642

- 한편, 올 하반기 개소예정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이하 “감정노동센터”)의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동 조례에서는 따로 감정노동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분리·신설되는 감정노동센터 또한 시의 근로자복지시설 중 하나로, 향후 동 조례상의 근로자복지시설 명칭에 감정노동센터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다양한 시의 노동시설들의 집약, 전국 최초의 전태일 기념관 조성이라는 점에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의 개관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이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시는 237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건물 취득을 통해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게 된 만큼, 동 시설이 공공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표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또한 노동복합시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재해 있는 관련 노동시설들과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수요자 맞춤형 서

1) 제21조(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시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뿐만 아니라 동 조례에 따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시의 근로자복지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노동권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0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12일

발 의 자 : 신건택, 강구덕, 김영한,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남창진, 맹진영, 박마루,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유 용, 이명희,
이성희, 이해경 의원(17명)

1. 제안이유

서울시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조례상에 전태일 열사 기념 및 시민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되는 “전태일 노동 복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전태일 노동 복합시설”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노동권익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신 설></p>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p>[별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노동권익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전태일 노동복합시설</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u></td> </tr> </tbody> </table>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u>전태일 노동복합시설</u>	<u>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u>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u>전태일 노동복합시설</u>	<u>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u>																		